

최상의 의료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의료체계 구축·실태 조사-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개선 계획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JEOLLABUK-DO NAMWON MEDICAL CENTER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I. 시간외수당 등의 과다 지급 및 연월차보전·보건수당 지급 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월급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월 기준시간을 산정하면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한 209시간이 월 기준시간이 된다.

그런데 아래 <표 1> “남원의료원 시간외수당 등 과다 지급 명세(2010 ~2012년)”와 같이 남원의료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12월말 현재까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함으로써 위 209시간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외수당 등을 344,828천원 만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1> 남원의료원 시간외수당 등 과다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기관명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과다 지급 차액(A-B)			
	시간외	휴일	야간	시간외	휴일	야간	시간외	휴일	야간	계
남원의료원	1,226,097	893,489	763,175	1,079,435	786,612	671,886	146,662	106,877	91,289	344,828

또한 2003. 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9조에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되었고,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서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에서 “유급”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3년 12월 노동부에서 시달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연월차휴가를 축소하되 기존임금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하였고, 임금 총액이 「근로기준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이 보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감사결과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종·직급별로 「근로기준법」 개정 전(2003년 7월 ~ 2004년 6월)과 개정 후(2004년 7월 ~ 2005년 6월)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점검한 결과, 개정 전보다 임금이 평균 5.3%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아래 <표 2> “남원의료원 평균임금 상승률 및 수당 지급 현황(2010 ~ 2012년)” 과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월차보전수당 431,846천원을 지급하였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수당 609,264천원을 지급하였다.

<표 2> 남원의료원 평균임금 상승률 및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기관명	평균임금 상승률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남원의료원	5.3	150,871	145,688	135,287	431,846	200,515	200,702	208,047	609,264

시정요구사항

- 남원의료원에서는 임직원 수당 지급 규정 중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당 등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 시간외 수당 등의 과다 지급현황
 - 현재 남원의료원의 경우 산정기준 시간은 184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 금액은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음.
 - ※ 통상임금 :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단체협약)

※ 법적통상임금 :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은 제외되어 있음.

- 현재 시간외 수당 지급 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의거 평일 3시간, 공휴일 4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보다 낮은 시간 책정으로 실제 지급액이 법정수당 보다 현저하게 낮게 지급하고 있음.

○ 생리휴가 유급현황

- 법적근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3조)
- 남원의료원 단체협약 : 의료원은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 시 보건수당을 공제한다. (61조생리휴가 및 보건수당)(규범적)
- 단체협약 근거에 의거 월 1회의 보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1회의 생리휴가 부여 시 간호과의 경우 월 15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 8명의 간호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률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 보충도 어려운 상황임.

- 보건수당 및 인건비 지출현황(간호과만 적용시)

(단위 : 천원)

구 분	생리휴가	인건비(간호사)	증감	비 고
소요일, 인원	월 150일	월 8명		2013년 기준
비용(연간)	208,047	240,000	증 31,953	간호사 채용 시 비용증가

○ 연월차 보전 수당 지급 현황

- 지급근거 :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 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수당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 시행일 기준(2004년 7월 1일)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중앙협약서, 단체협약 제 60조)규범적

- 변호사 자문 결과 : 직원에 대한 연월차보전수당의 지급이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민주노총 산하 26개 의료원 중 26개 의료원 모두 지급
- 2004년 7월 1일부터 연월차 산정일수가 2004년 7월 이전 산정일수보다 적게 개정되어 그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임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서 임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보전수당임.
- 감사원감사결과 임금 5.3%인상은 04년 기본급 2%, 05년 위험수당 1만원 가계안정비 기본급의 50%인상으로 인한 순수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평균임금이며, 보전수당으로 인해 인상이 된 것은 아님.

나 향후대책

- 시간외 수당 등의 과다지급에 대한 규정개정 및 단체협약 체결
 - 규정개정 : 12월중(209시간으로)
 - 단체협약 체결 : 향후 노·사 안정화로 단체협약 체결(시기 미정)
- ※ 규정개정은 실행하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으로 인해 실제지급은 단체협약 체결이후 가능하며, 현재 남원의료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산정 방법에서 184×3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시에는 209×실제근무시간 산정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적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통상임금 및 209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외수당 및 법적수당을 산정 하여야 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 발생
- 생리휴가 유급 및 연월차 보전수당 지급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노력
 - 향후 노·사 안정화로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측과 논의하여 개정노력
- ※ 현재 단체협약 규범적 조항으로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측의 동의 필요.

II. 치료재료 구매계약 업무 시정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26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9조와 제2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하는 치료재료와 같은 물품은 단가계약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때 구매 추정 합계액(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추정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2012년에 남원의료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치료재료를 구입한 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감사한 결과 <표 3> “업체별 2,000만 원 이상 치료재료 구매 명세(2012년)”와 같이 남원의료원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치료재료를 구매한 업체는 총 5개 업체이며 구매금액은 407백만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치료재료 총 구매금액의 57% 상당인 232백만원 상당의 치료재료가 구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구매한 것인 등, 치료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3> 업체별 2,000만원 이상 치료재료 구매 명세(2012년)

(단위: 개, 백만 원)

기관명	업체명	구매품목	구매총액	계약 없이 구매	경쟁입찰	수의계약	비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메디코리아	cm system 등 91종	113	113			
	백산메디칼	cortex screw 등 60종	47	47			
	솔메디칼	3.5 clavicle locking 등 104종	44	44			
	지엠메디칼	bio-corkscrew suture 등 49종	28	28			
	세기사	가도비스트 등 51종	175		175		
	5개 업체		407	232	175		

시정요구사항

- 남원의료원에서는 i)치료재료의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ii)단가 계약 대상의 기준을 정하여 iii)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하는 치료재료는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료재료 구매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4.09.2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 2014.9.25.일 입찰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가 조치사항

- 치료재료 사용부서에서 치료재료 사용 대장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하는 치료재료를 단가계약 대상으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 고시 보험 상한가로 구매하던 시스템을 2014년도 구매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여 공급업체 선정에 투명성 확보
 -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하는 사용 횟수가 많은 치료재료(71품목)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015년 3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계약 완료

나 향후계획

-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공개경쟁입찰 시행

III. 의료장비 심의 규정 미비 사항 개선

감사결과 ‘의료장비 심의 규정’ 미비 사항인 품목, 규격 결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표 4〉 남원의료원 의료장비 심의기준 미비 세부 현황

의료기관명	심의 대상 장비 기준	예산수의 검토규정	구매 우선순위 결정 세부기준	품목, 규격 결정 기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1,000만 원 이상	있음	1. 장비구매의 시급성 2. 장비활용의 적절성 3. 장비운영계획 4.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5. 기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없음

시정요구사항

- 남원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심의 규정 미비 사항인 품목, 규격 결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현 황

- 14년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제출한 의료기기 구입신청서 및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심의위원의 의료기기 검토
 - 의료기기 구입신청서 : 내용연수 경과 여부, 견적서, 규격서, 카달로그 (제조사) 등 첨부
 - 의료기기 활용계획서 : 시급성, 활용 적절성, 운영계획 등
- 2014. 10. 30. 제5차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의료기기 검토사항 중 장비 성능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기 평가서에 추가 작성해 활용

나

향후대책

- 2014. 11월 이후 장비 도입 시 의료기기 평가서*(별첨) 적용 시행
 - 품목, 규격 결정 기준 마련으로 의료기기의 규격, 성능 등의 적정 여부 심의

의료기기 평가서

□ 의료기기명 :

검토 사항		적합(○)	부적합(×)
1. 구매 시급성에 관한 사항	① 진료상 필수 장비 여부		
	② 유사장비 보유 여부		
	③ 기존장비 노후도		
2. 비용 효과성 및 활용도에 관한 사항	④ 예상활용건수		
3.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⑤ 장비운영인력 확보 여부		
	⑥ 추가소요인력		
4. 장비 성능 및 규격에 관한 사항	⑦ 복수전적서		
	⑧ 제조사(생산국)		
	⑨ 규격, 성능, A/S 등 적정여부		
5. 장비 금액에 관한 사항	⑩ 구매가격 적절성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참석한 심의위원 중 10문항 중 6문항 이상 적합으로 인정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처리.

2014. 10. .

심의위원 : (인)